9. 학적변동

가. 휴 학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질병, 군입대, 기타)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휴학절차

  전남대학교 포털(http://arsam.jnu.ac.kr) → 로그인 → 교육지원 → 내 학사행정 → 휴·복학/전공신청 → 휴학신청 → 휴학구분선택 → 휴학사유선택 → 휴학기간선택 → 복학일정계산 → 신청 → 도서관검증(전산) → 휴학신청완료
- 휴학의 종류 및 허가시기

종 류	허 가 시 기	휴 학 사 유	제 출 서 류
일반휴학	당해 학기 수업일수 1/2선 이내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	
미등록 휴학	총장이 설정한 등록금 납부기간 내	가정형편에 의하여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질병 휴학	수시	질병으로 당해 학기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	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장 및 종합병원장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군입대 휴학	수시	재학 중 군입대 명령서에 의해 군입대하고자 할 때	입영통지서를 학생 포털에 업로드
임신·출산·육아휴학	수시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인해 휴학을 원할 때	임신확인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행정실에 제출
군복무 신고	수시 (일반휴학기간 내)	일반휴학기간 중에 군입대할 경우 군휴학으로 변경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휴학 연장	휴학만료일 이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창업 휴학	당해 학기 수업일수 1/2선 이내	창업관련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	창업교육센터에서 발급한 승인서를 행정실에 제출

※ 유의 사항

- 휴학은 통산 8학기(예과, 편입 4학기까지) 허가함.
- 신입학년도 제1학기와 수업일수 1/2 경과 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에 학칙 제34조에 의한 휴학기간 및 횟수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 허가함.

나. 복 학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복학절차

전남대학교 포털(http://arsam.jnu.ac.kr) → 로그인 → 교육지원 → 내 학사행정 → 휴·복학/전공신청 → 복학신청 → 복학구분선택 → 신청 → 복학신청완료

- 복학의 종류와 허가시기

종 류	허가시기	복 학 사 유	제 출 서 류
일반 복학	정해진 **복학기간** 내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시	
군제대 복학	수업일수 1/4선 이내	군 제대	
귀향 복학	수업일수 1/4선 이내	군입대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때	귀향증 사본

※ 유의 사항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된다.
-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군 입대 휴학 자는 당해 등록기간에 복학할 수 있다.
- 군 입대 휴학 자는 전역 후 시작되는 최초 학기에 복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짝 학기가 되어 교과목이수가 곤란한 경우 그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 귀향 복학 자의 경우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는 복학한 후 수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동된다.

다. 퇴 학

- 본교를 퇴학(자퇴)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퇴학원(본교 소정양식) →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라. 제 적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한 학생은 제적한다.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이중 학적 보유자
-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제5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횟수를 초과한 자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당해 학기 성적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어 소속대학(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제의를 한 자

마.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 대학에서 학생들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의 이동이 가능토록 하여 능력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소속 대학 내에서 학부(과)를 변경하거나 다른 대학의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기

- 모집단위간 이동의 시행 시기는 매 학년도 제1학기 개시 전으로 한다. 단, 후기모집으로 입학하여 제2학기부터 재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매 학년도 제2학기 개시 전에도 할 수 있다.

2) 제한 학과

- 간호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부, 예·체능계학과(단, 디지인학과, 미술학과는 전입 허용), 의예과, 의학과

3) 허가범위 및 허가학과(전입기준)

가) 모집단위간이동 허가는 학과(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총장이 허가하되,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단, 사범대학은 공고일 당시 재적인원이 입학정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단위간이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 전출제한은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학년별 인원을 통산하여 산정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이상 범위내에서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출제한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캠퍼스간 이동에 대한 전출제한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이 모집단위간 이동을 지원하는 학부(과)의 허용인원은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캠퍼스간 이동: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지원 자격

가) 모집단위간이동의 신청은 현재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재학생과 복학예정자(단, 편입 학생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2학년 진입: 2개 학기 등록과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자(단, 당해 계절학기 수업 학점 미포함)
- 3학년 진입: 4개 학기 등록과 취득학점이 65학점 이상인 자(단, 당해 계절학기 수업 학점 미포함)
- 4학년 진입: 6개 학기 등록과 취득학점이 95학점 이상인 자(단, 당해 계절학기 수업 학점 미포함)

나)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에 대하여는 지원자격을 휴학자를 포함하고 성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 자율전공학부(1년) 및 글로벌학부 학생은 모집단위간이동(전과)을 지원할 수 없다.

5) 지원 방법

- 모집단위간이동을 원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전남대학교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6) 선발

가) 모집단위간이동 지원서를 받은 대학장은 「모집단위간이동 지원자 사정부」에 의거 학부(과)별 허가인원의 범위 내에서 적격자를 선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나) 지원자의 선발은 폐지된 모집단위 재적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기 취득한 성적과 면접 및 학부(과)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고 해당 학부(과)에서는 반영비율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단,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학생이 모집단위간이동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대학장(전입)은 그 학생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단, 모집단위간 이동이 제한된 학과와 사범대는 제외)

7) 재학 연한 등

- 모집단위를 이동한 자의 재학연한 및 학적변동사항(휴학, 복학, 학사경고)은 종전의 재학연한 및 학적변동사항을 통산한다.

8) 교과 이수

- 전공학점: 이동한 학부(과)의 전공배정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소속 학부(과)에서 기 취득한 전공 및 일반선택 학점은 이동한 학부(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재사정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9) 기타 사항

가) 소속 대학장은 「모집단위간이동 지원 승인대장」을 비치하고 모집단위간이동 승인내역을 기록하여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학적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2중지원시 전부 무효처리함)

나) 소속 대학장은 「모집단위간이동 합격사정 종료 후 전형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전공배정 하는 학부(계열)에서는 모집단위간이동자(전입)에 대해서도 전공 배정을 하여야 한다.